

 <p>거창군 Geochang County</p> <p>공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는다.</p>	<h1 style="font-size: 4em; margin: 0;">공 보</h1> <p style="font-size: 1.5em; margin: 0;">제928호 2023. 9. 6.(수)</p>	
---	--	---

선 결	기관의 장

훈 령

거창군 훈령 제470호 거창군 안전보건관리규정 전부개정규정 2

고 시

거창군 고시 제2023-107호 도로명주소 고시 26

거창군 고시 제2023-108호 도로구간 변경 고시 27

공 고

거창군 공고 제2023-1320호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상인회 등록 공고 30

거창군 공고 제2023-1322호 거창군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31

거창군 공고 제2023-1326호 「거창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폐지안 입법예고 40

회 램									
------------	--	--	--	--	--	--	--	--	--

발 행 : 거창군 편 집 : 기획예산담당관 (☎055-940-3043)
 ※ 거창군 공보는 거창군 홈페이지(<http://www.geochang.go.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거창군 안전보건관리규정 전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거 창 군 수

서 명 생 략

2023년 9월 6일

거창군 훈령 제470호

거창군 안전보건관리규정 전부개정규정

거창군 안전보건관리규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거창군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거창군이 시행하는 사업의 자율적인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관리책임 체제와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4조(안전보건방침) ① 근로자는 업무수행에 있어 안전제일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②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업장에 적합한 안전보건방침을 정하여야 하며, 이 방침에는 안전보건에 관한 경영방침과 목표, 성과개선에 대한 의지가 분명히 제시되어야 한다.

③ 안전보건방침은 간결하게 문서화하고 경영책임자의 서명과 시행일을 표기하여 근로자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제5조(준수 의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 이 규정에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준수
2.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
3. 근로조건을 개선하여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
4. 군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개선하고 필요한 조치 이행

② 근로자는 이 규정에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장 안전보건관리 조직과 직무

제6조(안전보건관리조직) 군수는 안전·보건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조직을 구성한다.

제7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군수는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총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법 제15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된다.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법 제15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업무
2.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에 대한 지휘·감독

제8조(관리감독자) ① 군수는 법 제16조에 따라 각 사업장과 그 소속 직원에 대한 안전·보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본청 담당관·과,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의 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을 관리감독자로 임명한다.

② 군수는 각 사업장 등에 대한 안전·보건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부서장 외의 사람을 관리감독자로 임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속 근로자를 직접 지휘·감독할 수 있는 직위에 있는 사람 중 담당주사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직급의 사람을 임명한다.

③ 관리감독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5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9조(안전관리자) ① 군수는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을 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자를 둔다.

② 안전관리자는 시행령 제18조제1항의 각 호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한다.

③ 군수는 안전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외부전문가의 평가·지도를 받을 수 있다.

④ 안전관리자는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보건관리자와 협력하여야 한다.

⑤ 법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다시 임명하는 경우 또는 안전관리자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선임하거나 위탁하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보건관리자) ① 군수는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을 하기 위하여 보건관리자를 둔다.

② 보건관리자는 시행령 제22조제1항의 각 호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한다.

③ 군수는 보건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외부전문가의 평가·지도를 받을 수 있다.

④ 보건관리자는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안전관리자와 협력하여야 한다.

⑤ 법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선임하거나 다시 임명하는 경우 또는 보건관리자 업무를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선임하거나 위탁하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야 한다.

제11조(산업보건의) ① 군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나 그 밖의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지도하기 위하여 산업보건의를 선임하거나 외부에서 위촉할 수 있다.
② 산업보건의는 시행령 제31조제1항의 각 호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한다.
③ 군수는 소속 직원 외의 사람으로 산업보건의를 위촉하여 자문 등을 한 경우 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명예산업안전감독관) ① 군수는 법 제23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대한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근로자, 근로자 단체 및 산업재해 예방 관련 전문단체에 소속된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한 사람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둘 수 있다.
②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의 중지요청, 근로자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 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군수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수행과 교육에 필요한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③ 군수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서 정당한 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그 밖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 및 운영사항은 시행령 제32조 및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운영규정」(고용노동부예규)에 따른다.

제13조(작업지휘자) 군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39조제1항에 따라 작업지휘자를 지정하는 작업을 실시하는 경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고, 작업지휘자는 그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감독하여야 한다.

제14조(안전보건관리체제의 처리방법) 군수는 법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2조의 안전보건관리체제의 임명, 지정, 위촉 등과 관련한 사항은 전자적으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시 서면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처리서류를 관련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제3장 안전보건교육

제15조(안전보건교육 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매년 1월 말까지 해당 연도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안전보건교육 계획에 수반하는 비용은 안전총괄과 예산으로 편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후 교육성과를 측정하여 다음연도의 안전보건교육 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안전보건교육의 시행) ① 군수는 법 제29조에 따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관리감독자에게 위임하여 실시한다.

② 관리감독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6조제3항 각 호에서 정한 사람으로 하여금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③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은 근로시간 내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근로시간 외에 이루어질 때에는 근로시간에 준하여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7조(안전보건교육) ① 군수는 법 제29조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교육
2. 신규 채용 시 교육
3.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4. 특별교육
5. 그 밖에 관련 법령에서 정한 교육

② 제1항 각 호의 교육 대상자·시기·시간·내용 등은 관련 법령에 따른다.

③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는 해당 안전보건교육에 참석하여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며, 교육내용을 숙지하고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8조(직무교육) ① 군수는 법 제32조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에게 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직무와 관련한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하고,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교육 대상자·시기·시간·내용 등은 관련 법령에 따른다.

제19조(기록·보존) 관리감독자는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에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 교육 일시 및 장소
2. 교육담당자
3. 교육 과정 및 내용
4. 교육 대상자 및 참석인원
5. 그 밖의 교육결과를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제20조(안전보건교육 결과 보고) ① 관리감독자는 제19조에 따른 증명서류를 안전총괄과장에게 분기별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안전총괄과장은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결과를 반기 1회 이상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작업장 안전관리

제21조(안전보건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의 보좌를 받아 안전보건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는 별도로 작성할 수 있다.

1. 산업재해 예방 관련 현황
2. 중대산업재해 및 산업재해 발생 대응 매뉴얼
3. 사업장 유해위험요인 발굴 개선 방안
4. 사업장 안전보건 확보 사항 점검 계획
5.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계획
6. 안전보건 예산 편성 현황 및 추진계획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안전보건교육 계획을 포함하여 기본계획을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5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계획은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22조(안전보건관리 실행계획의 수립) ① 관리감독자는 제21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라 안전보건관리 실행계획(이하 “부서별 실행계획”이

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부서별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부서별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계획
2. 중대산업재해 및 산업재해 발생 대응 매뉴얼
3. 소관 사업장 유해위험요인 발굴 개선 방안
4. 근로자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소통 방안
5. 그 밖에 관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3조(방호조치) ① 관리감독자는 동력에 의해 작동되는 기계, 기구는 방호 조치를 한 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전기나 가스와 관계되는 작업은 감전 및 중독사고 예방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한 보호조치 등을 한 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제1항에 따라 설치된 방호조치를 임의로 해체하여서는 안 되며, 방호조치의 기능이 상실된 것을 발견할 때에는 지체 없이 관리감독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4조(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 군수는 안전인증을 받지 않거나 자율안전확인의 신고를 하지 않은 기계·기구·설비 및 방호장치·보호구 등을 수입·양도·대여·사용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비치하지 아니한다.

제25조(안전검사) ① 군수는 군 소유의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로서 시행령 제78조에서 정하는 것(이하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경우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불구하고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법 제98조에서 정하는 기준 등에 충족하는 검사프로그램을 정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아 그에 따라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검사를 하면 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구체적인 인정절차는 시행규칙 제132조에 따른다.

④ 제3항의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을 받지 아니하거나 인정이 취소된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에서 정하는 안전검사대상기계등에 대하여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인증기준 또는 자율안전기준,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기계·기구·설비 및 방호장치·보호구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26조(안전순찰) 관리감독자는 근로자의 근로 상태, 작업환경 등을 점검하고 수시로 순찰하여야 한다.

제27조(사업장의 안전조치) 관리감독자는 해당 사업장에서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작업 전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1. 작업규율의 확립 여부
2. 작업계획 수립의 적정 여부
3. 작업배분 및 공정관리의 적정 여부
4. 작업용구, 작업장구 및 안전장구의 적정 여부
5. 차량의 점검정비 적정 여부
6. 그 밖에 안전한 작업에 필요한 사항

제28조(안전수칙) ① 안전관리자는 해당 사업장의 실정에 맞게 안전수칙을 게시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수칙을 항상 숙지하고 이를 준수함으로써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제29조(위험물질의 보관 및 사용) ① 군수는 위험물질을 작업장 외의 별도의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작업장 내부에는 작업에 필요한 최소량만을 두어야 한다.

② 군수는 위험물질 보관 장소에 화기의 휴대 및 관계자 외 출입을 금지해야 하며, 이를 위해 해당 장소에 출입금지 표지를 부착하고, 해당 물질의 위험성을 게시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장소임을 알려야 한다.

제30조(작업중지) ①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 장소로부터

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한 후 작업을 다시 시작하여야 한다.

② 사업장의 작업중지 조치는 군수의 지시에 의하여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급박하여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해당 관리감독자가 즉시 업무를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먼저 취하여야 한다.

③ 근로자는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사고가 발생하여 작업 진행이 어려운 경우 작업을 중지 후 대피할 수 있으며, 중지사유를 지체 없이 관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근로자가 보고한 작업중지에 대한 사항은 개선조치 전까지 작업을 재개할 수 없다.

제31조(안전보건표지 작성 및 게시) ① 사업장의 유해·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는 근로자의 안전보건 의식 고취를 위하여 경고, 지시, 안내, 금지 등의 안전보건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②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해당 근로자의 모국어로 작성된 안전보건표지를 부착한다.

제32조(안전기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안전기준은 안전보건규칙에 따른다.

제5장 작업장 보건관리

제33조(작업환경측정) ① 군수는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125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의 결과를 해당 작업장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설비의 설치·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4조(근로자 건강진단) ① 군수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유지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건

건강진단을 하는 기관에서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하여야 한다.

② 건강진단의 종류·시기·주기·항목 등 건강진단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129조부터 제135조까지와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른다.

제35조(근골격계질환 예방) ① 군수는 근골격계부담작업(반복작업, 부적절한 작업자세, 무리한 힘의 사용 등)으로 인하여 근골격계질환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이 질환의 예방을 위한 관리지침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근골격계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는 사업장에서 제공하는 근골격계질환 예방사업에 적극적으로 따라야 하며, 작업 전·후 적절한 스트레칭을 실시하여 스스로 질환의 예방에 힘써야 한다.

③ 군수는 안전보건규칙에 따른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제36조(유해물질 취급 및 관리) ① 군수는 안전보건규칙 제420조에 따른 관리대상 유해물질(이하 “관리대상 유해물질”이라 한다)을 취급하는 경우 건강장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작업을 지휘하고 환기설비의 이상 유무 점검 및 보호구 착용 상황을 감시하는 등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감독자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에 관계자 외 출입을 금지시키거나 그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37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① 군수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군수는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담은 용기에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고시)(이하 “고용노동부고시”라고 한다)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경고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용기에 이미 경고표시가 되어 있는 등 고용노동부고시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군수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하고, 이 관리 요령은 유해·위

협성이 유사한 대상화학물질의 그룹별로 작성하여 게시할 수 있다.

1. 제품명
2.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물리적 위험성
3. 안전 및 보건상의 취급주의 사항
4. 적절한 보호구
5.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 시 대처방법

제38조(보건수칙) ① 보건관리자는 근로자의 건강상 필요한 작업수칙 및 보호구 착용 등에 관한 수칙을 게시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보건수칙을 항상 숙지하고 이를 준수함으로써 건강장해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제39조(보호구) ① 군수는 근로자의 작업상 필요한 보호구를 지급하여야 하며 그 지급기준은 안전보건규칙에 따른다.

② 근로자는 작업상 필요한 해당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하며 지정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40조(질병자의 근로금지 및 취업제한) ① 군수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감염병, 정신병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현저히 나빠질 우려가 있는 질병으로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질병에 걸린 사람에게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가 금지되거나 제한된 근로자가 건강을 회복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업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제41조(휴게시설 설치·운영) 군수는 근로자들이 직무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42조(보건기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건기준은 안전보건규칙에 따른다.

제6장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

- 제43조(사고발생 시 대응절차)** ① 군수는 근로자의 사고발생 시 적극적으로 사고확대방지와 재해자 응급구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사고발생 최초 목격자나 최초 발견자는 해당 부서 관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해당 부서에서는 안전총괄과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사고발생 현장은 사고조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 원형대로 보존되어야 하며, 중대재해의 경우는 관계 행정기관의 조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 변형되거나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는 사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절차에 따라 관련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⑤ 사고조사 시 근로자대표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근로자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
- ⑥ 사고발생 시 긴급조치, 처리절차 등은 소속 부서별 수립한 부서별 실행 계획에 따른다.
- ⑦ 사고대책본부나 사고조사위원회가 필요한 경우 별도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⑧ 군수는 사고조사가 마무리된 경우 재해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조속히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 제44조(사고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① 사고발생 원인조사는 군수 주관하에 신속하고 중립적인 자세로 사고발생 사유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발굴하고 대책을 수립하여 동종사고 재발방지 및 사고 예방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대재해인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 ② 안전총괄과장은 사고발생원인과 재발방지대책을 군수에게 보고한 후 관련부서에 개선대책, 추진일정 등을 포함한 개선요구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 ③ 개선요구서를 받은 관련 부서장은 모든 일에 우선하여 개선하여야 한다.
- ④ 안전총괄과장은 개선일정에 따라 개선여부를 확인하고 개선이 미흡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 ⑤ 사고사례, 동종재해예방대책, 개선내용 등을 군 누리집, 내부 전산망, 홍보물, 안전보건교육 등 1개 이상의 방법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공지한다.

⑥ 산업재해의 발생원인 등 기록에 관한 문서는 3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제45조(재해발생현황분석 및 종합대책수립) 군수는 매년 발생재해를 종합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재해분석 결과는 전 부서에 통보하고, 게시판 등에 공지한다.

제7장 위험성평가

제46조(위험성평가 계획수립) 군수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험성평가의 목적, 평가방법, 담당자 역할, 책임자 역할, 평가 대상별 역할, 주지방법, 유의사항 등에 관한 연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7조(위험성평가 교육) 군수는 위험성평가 담당자 또는 관계자 등에게 위험성평가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외부교육기관의 강좌를 수강하게 하거나 자체적으로 위험성평가 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제48조(근로자 참여) 군수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때,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1.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판단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유해·위험요인별로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2. 해당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는 경우
3.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4.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경우
5. 위험성 감소대책 실행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제49조(위험성평가 실시 및 실행) ① 군수는 사업장의 공정과 작업내용에 적합한 위험성평가 방법을 선정하여 다음 절차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1. 사전준비
2. 유해·위험요인 파악

3. 위험성 결정

4.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5. 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에 관한 기록 및 보존

② 위험성평가의 각 단계별 절차의 수행은 법 제36조 및 「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고시)에 따른다.

③ 위험성평가 시 산업안전·보건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④ 위험성평가 실행 결과 남아 있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해서는 게시, 주지 등의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 제52조를 참조하여 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에 대해 기록을 유지한다.

제50조(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① 군수는 제49조제1항제3호에 따라 허용 가능한 위험성이 아니라고 판단한 경우에는 위험성의 수준, 영향을 받는 근로자 수 및 다음 각 호의 순서를 고려하여 위험성 감소를 위한 대책을 수립·실행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과 그 밖에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반영하여야 한다.

1. 위험한 작업의 폐지·변경, 유해·위험물질 대체 등의 조치 또는 설계나 계획 단계에서 위험성을 제거 또는 저감하는 조치

2. 연동장치, 환기장치 설치 등의 공학적 대책

3. 사업장 작업절차서 정비 등의 관리적 대책

4. 개인용 보호구의 사용

② 군수는 위험성 감소대책을 실행한 후 해당 공정 또는 작업의 위험성의 수준이 사전에 자체 설정한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수준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위험성이 자체 설정한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으로 내려오지 않는 경우에는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이 될 때까지 추가의 감소대책을 수립·실행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중대재해, 중대산업사고 또는 심각한 질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험성으로서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위험성 감소대책의 실행에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잠정적인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51조(위험성평가 실시시기) ① 위험성평가 주기는 최초평가, 수시평가, 정기평가, 상시평가로 구분한다. 이 경우 최초평가 및 정기평가는 전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② 최초평가는 사업이 성립된 날로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최초 위험성평가를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이루어지는 작업 또는 공사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작업 또는 공사 개시 후 지체 없이 실시하여야 한다.

③ 수시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추가적인 유해·위험요인이 생기는 경우에는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실시한다. 다만, 제5호의 경우 재해발생 작업을 대상으로 작업을 재개하기 전에 평가한다.

1.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2.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3.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4.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5.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 발생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④ 정기평가는 최초평가 후 매년 정기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실시한다.

1. 기계·기구, 설비 등의 기간 경과에 의한 성능 저하
2. 근로자의 교체 등에 수반하는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지식 또는 경험의 변화
3.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새로운 지식의 습득
4. 현재 수립되어 있는 위험성 감소대책의 유효성 등

⑤ 상시평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는 경우 제3항과 제4항의 수시평가와 정기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매월 1회 이상 근로자 제안제도 활용, 아차사고 확인, 작업과 관련된 근로자를 포함한 사업장 순회점검 등을 통해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하여 위험성 결정 및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실행을 할 것
2. 매주 군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등을 중심으로 제1호의 결과 등을 논의·공유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할 것
3. 매 작업일마다 제1호와 제2호의 실시결과에 따라 근로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및 주의하여야 할 사항을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등을 통해 공유·

주지할 것

제52조(위험성평가 문서화) ① 군수는 위험성평가 수행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문서화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록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위험성평가를 위해 사전조사 한 안전보건정보
2. 평가대상 공정의 명칭 또는 구체적인 작업내용
3.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4. 위험성 결정의 내용
5. 위험성 감소대책 및 실행
6. 위험성 감소대책의 실행계획 및 일정 등
7. 그 밖에 사업장에서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② 위험성평가에 관한 문서는 최소 3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제8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제53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법 제24조제2항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5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을 같은 수로 하되,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근로자위원: 근로자대표, 공무원 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근로자대표, 공무원 대표가 추천한 사람
2. 사용자위원: 군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를 포함함 10명 이내의 군수가 지명한 사람

② 군수는 제1항제2호에 따라 사용자위원을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지명한다.

1. 안전관리자
2. 보건관리자
3. 안전총괄과장
4. 경제기업과장

5. 건설교통과장
6. 농업기술센터소장
7. 산림과장
8. 환경과장
9. 행정과장

③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2항 각 호의 부서장 외에도 지명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互選)하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무를 담당하는 간사를 1명씩 둘 수 있다.

제5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사용자위원 및 근로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근로자대표, 공무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군수,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는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1명을 지정하여 위원으로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제56조(위원의 신분 및 활동 보장) ① 군수는 근로자의 위원회 활동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며, 위원회 활동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위원회 운영을 위한 사전준비 및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57조(회의록 작성 및 보존)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 내용 및 의결·결정 사항
4. 그 밖의 토의사항

② 회의록은 작성일부터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58조(회의 결과 등의 공지) 위원장은 심의·의결한 내용 및 회의 결과 등을 게시판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제9장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

제59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군수는 법 제2조제7호의 도급인이 될 때에는 법 제62조에 따라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된다.

제60조(적격 수급인 선정의무) 군수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해야 한다.

제61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군수는 도급·용역·위탁 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법 제63조 및 제64조에 따라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를 하고 관련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0장 보칙

제62조(무재해운동) 군수는 근로자의 자율적인 안전사고 예방운동으로 안전사고 예방의식을 고취하고 안전사고를 근절하기 위하여 무재해운동을 추진한다.

제63조(문서기록 보존) 군수는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 관련 서류를 법 제164조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안전보건교육 증명서류

<h1 style="text-align: center; text-decoration: underline;">안전보건교육 일지</h1>		결 재	담당자	담당주사	과장
교육일시 : 2023. . . 시간기재 (예. 13:00~16:00)					
교육과정	가. 정기교육 나. 채용 시의 교육 다. 작업내용 변경 시의 교육 라. 특별교육 마. 그 밖의()교육 (과정종류 체크) ※ 교육과정 및 교육대상별 교육시간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4] 참조				
교육인원	구 분	계	남	여	교육 미 실시 사유
	교육 대상자 수				
	교육 실시자 수				
	교육 미 실시자 수				
교육내용	예시) 1. 보호구 종류 및 사용법 - 보호구의 종류: 000, 000 - 보호구 착용 대상 작업 ※ 작업 내용 별 착용 보호구 착용 방법을 부서실정에 맞게 작성 3. ‘내 몸을 지키는 보호구’ 동영상 교육(교육시 활용) 4. 산업재해예방 골든타임 동영상교육(교육시 활용) 5. 작업내용 별 유해·위험요인 ※ 도로변 풀베기 시 신호수 배치, 미끄럼 방지 등				
교육 강사명 및 장소	직 위	성 명	교육장소		비 고
	관리감독자		* 관리감독자는 부서장, 읍면장 등 별도 임명된 사람		
기 타					

안전보건교육 참석자 명단

순번	소속	직 급	성 명	서 명	비고
1		기간제는 작성 불필요		정자체 자필작성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안전보건교육 실시 사진

교육사진

교육사진

거창군 안전보건관리규정 전부개정 계획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군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조문 및 조항을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정비하여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자 함.

□ 개정이유

- (민주노총 경남지부) 도내 전 시군 대상 안전보건관리규정의 부적정 사항*에 대한 진정접수 ⇒ 고용노동부
 - * 관련법령에서 정한 안전보건관리규정 중 내용 일부누락 및 부실
- (우리군 의견)
 - 진정인의 의견 및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의 권고사항*을 수렴
 - * 법령재기재에 해당이 되더라도 규정에 기재할 것을 권고
 - 우리 군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조문 및 조항을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정비하여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활동을 강화하고자 함

□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3(안전보건관리규정의 세부 내용)

□ 주요내용 <총10장 63조로 구성>

- 총칙(제1장, 안 제1조~제5조)
 -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의 목적과 적용범위
 - 사업주와 근로자의 재해예방 준수 의무 등
- 안전보건관리 조직과 직무(제2장, 안 제6조~제14조)
 - 안전보건관리 조직의 구성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명예 산업안전감독관의 직무 및 선임(또는 위촉)
 - 작업지휘자 배치 등
- 안전보건교육(제3장, 안 제15조~제20조)
 - 안전보건교육 계획의 수립·시행 및 기록
 -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등

- **작업장 안전관리(제4장, 안 제21조~제32조)**
 - 안전보건관리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
 - 기계·기구 등 방호조치, 유해·위험기계의 안전검사
 - 사업장 안전조치, 근로자 안전수칙 준수 등
- **작업장 보건관리(제5장, 안 제33조~제42조)**
 - 근로자 건강진단, 작업환경 측정 및 조치
 - 유해물질 취급 및 관리, 보호구의 지급, 보건수칙
 - 휴게시설 등 설치·운영 등
-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제6장, 안 제43조·제45조)**
 - 산업재해 발생 시 대응절차, 사고원인 조사 및 대책수립
 - 재해발생현황분석 및 종합대책 수립
- **위험성평가(제7장, 안 제46조~제52조)**
 - 위험성평가의 실시 시기 및 방법, 절차, 감소대책 수립 및 시행 등
- **거창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제8장, 안 제53조~제58조)**
 -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운영, 기록. 결과의 공지 등
- **도급 시 산업재해예방(제9장, 안 제59조~제61조)**
- **무재해운동, 문서기록보존(제10장, 안 제62조~제63조)**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변경·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 9. 6.

거창군수

○ 도로명주소 고시대상

- 건물번호 부여 :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춘전길 268-22 등 6건
- 건물번호 폐지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강변로3길 9-1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 (변경·폐지)사유	비고
(별 도 열 람)				

○ 도로명주소 사용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과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 및 제8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 이름,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 고시내용과 기타 사항은 거창군청 민원소통과(☎055-940-3313)로 문의하시거나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구간 변경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8조(도로명 등의 변경 및 폐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도로명 등의 고시 및 고지)의 규정에 따라 거창군 도로구간 변경에 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9월 6일

거창군수

1. 고시일자 : 2023. 9. 6.

2. 고시방법 : 거창군보, 거창군 홈페이지, 게시판

3. 고시내용 : 도로구간 변경에 관한 사항 / [붙임] 참조

※ 「도로명주소법」 제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 수렴 및 주소정보위원회 심의 등을 생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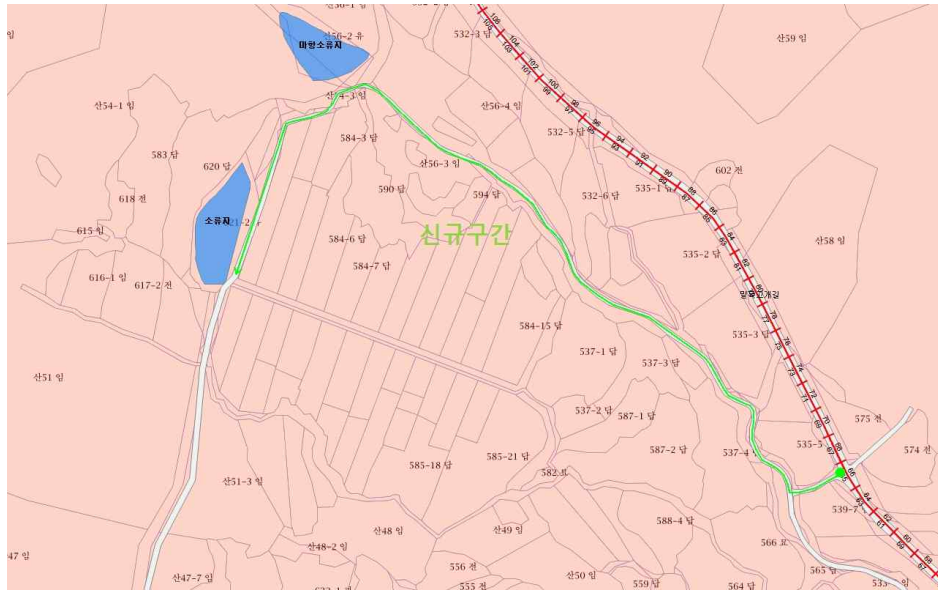
4. 참고사항

- 도로구간의 변경·폐지는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일 2023년 8월 2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 민원소통과(☎055-940-3313)로 문의하시거나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www.juso.go.kr)에서 열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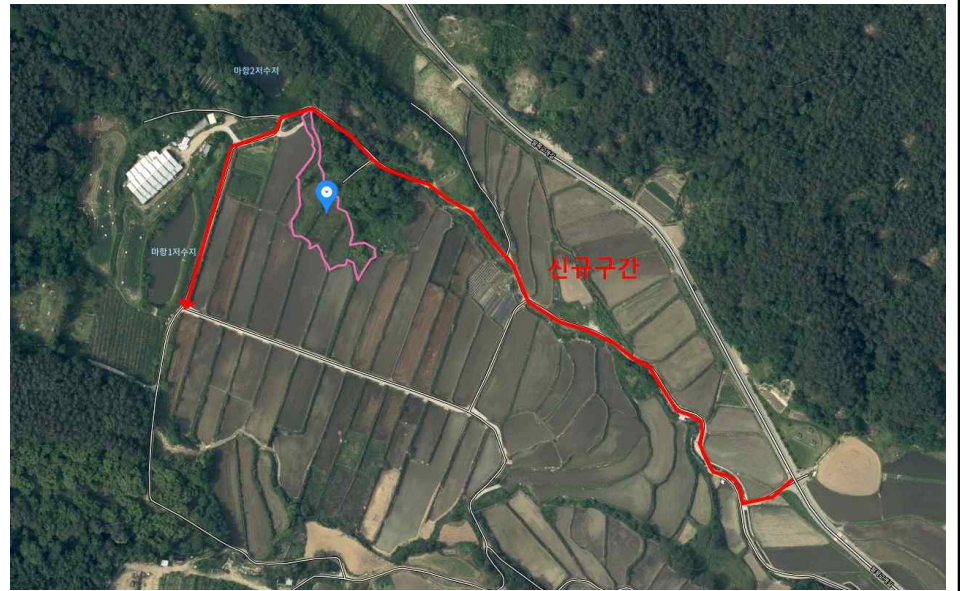
도로구간 변경 조서

일련 번호	행정 구역	구 분	도로명	도로구간		중양선	건물 번호	사물 주소	도로구간 변경 사유	비 고
				시작지점	끝지점					
1	위천면	변경 전	말목고개길	위천면 강천리 551 (말목고개길 65)	-	도면참조	0	없음	종속구간 생성	직권
		변경 후	말목고개길	위천면 강천리 551 (말목고개길 65-1)	위천면 강천리 584-18 (말목고개길 65-126)	도면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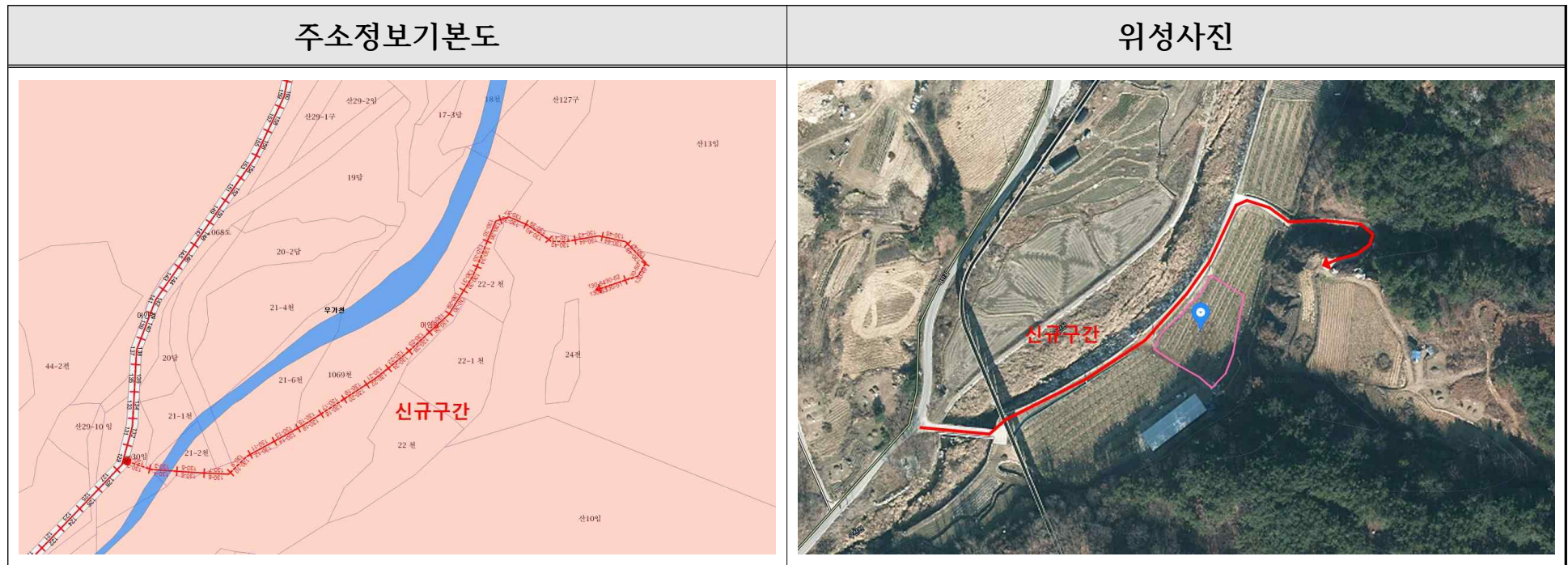
주소정보기본도



위성사진



일련 번호	행정 구역	구 분	도로명	도로구간		중양선	건물 번호	사물 주소	도로구간 변경 사유	비 고
				시작지점	끝지점					
2	거창읍	변경 전	어인길	가북면 용산리 산12 (어인길 130)	-	도면참조	0	없음	종속구간 생성	직권
		변경 후	어인길	가북면 용산리 산12 (어인길 130-1)	가북면 용산리 산30 (어인길 130-64)	도면참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상인회 등록 공고

1. 관련 근거

- 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의2의2, 제65조
- 나. 「거창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 다. 「거창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제25조

2. 위 관련 근거에 의거하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상인회 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명칭		대표자	소재지	규모		지정일 (상인회 등록일)
골목형 상점가명	상인회명			점포수 (개)	면적 (㎡)	
가조상점가 거리	가조상점가 상인회	노*호	경남 거창군 가조면 가조가야로 1110-13 일원	104	6,963	2023.8.31. (2023.8.31.)

2023년 9월 4일

거창군수

거창군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거창군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와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9월 5일

거 창 군 수

1. 자치법규명 : 「거창군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2. 제정이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2022. 6. 10. 공포, 2023. 6. 1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2023. 6. 9. 공포, 2023. 6. 11. 시행)의 일부개정조례로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이 신설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규정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지명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변경(안 제1조)

1) 제91조 →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

나. 위원회의 위원 수 및 부위원장의 자격을 조정함(안 제3조)

1) (위원 수) 7명 이내 → 10명 이내

2) (민간위원 수) 3명 이상 → 6명 이내

3) (부위원장)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지명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다. 규정 실익이 없는 조문 삭제(안 제3조 일부)

1) 위원회의 위원 위촉 겸임사항

라. 회의 소집 및 긴급 소집 규정 신설(안 제6조 제2항 신설)

마. 위원회의 서면심의에 대한 의사정족수의결정족수 규정 신설함
(안 제6조 제4항 신설)

바. 위원회의 수당 조항 신설(안 제10조)

사. 상위법령 재기재로 삭제(안 제10조, 11조)

4. 예고기간 : 2023. 9. 5.(화) ~ 9. 25.(월)

5. 의견제출

가.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3년 9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민원
소통과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주소: (우 50132)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 민원소통과

다. 전화: 055-940-3314 팩스: 055-940-3288, 이메일: autohope@korea.kr

라. 제출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붙임 1.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2. 「거창군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자치법규명 : 거창군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입법예고내용	의 견	비 고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거창군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91조”를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로 한다.

제3조 및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지명위원회의 구성) 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제2항에 따른 거창군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하고, 부위원장은 지명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도시건축과장

2. 위촉직

가.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하게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를 회신과 서면심의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및 제11조를 삭제하고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서면심의를 포함한다)한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 9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3조(구성) 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제1항에 따른 거창군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 위원의 수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민원소통과장, 도시건축과장 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p>④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가지명위원회 또는 경상남도 지명위원회(이하 “상급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을 위원회</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 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3조(지명위원회의 구성) 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제2항에 따른 거창군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한다.</p> <p>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하고, 부위원장은 지명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p> <p>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당연직: 도시건축과장 2. 위촉직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p>④<삭 제> 불필요한 규정으로 삭제</p>

의 위원으로 위촉하여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보고)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은 심의·의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경상남도 지명위원회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9조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신 설>

제11조(현장조사 등) 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을 하거나 그 밖의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나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하게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 심의서 회신과 서면심의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삭 제> 영 제95조 재기재로 삭제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서면심의를 포함한다)한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삭 제> 영 제93조 재기재로 삭제

관계법령 발취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국가지명위원회 등의 설치)

① 지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국가지명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 3. 23., 2020. 2. 18., 2022. 6. 10.>

1. 지명의 제정·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지명 관련 법령, 제도 및 정책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관할 지역의 지명의 제정·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시·도에 시·도 지명위원회를 두고, 시·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시·군·구 지명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2. 6. 10.>

③ 국가지명위원회, 시·도 지명위원회 및 시·군·구 지명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설 2019. 12. 10., 2022. 6. 10.>

④ 국가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시·도 지명위원회와 시·군·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9. 12. 10., 2022. 6. 10.>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의2(시·군·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등)

시·군·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시·군·구 지명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위촉할 것
2. 시·군·구 지명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지명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으로 할 것
3. 시·군·구 지명위원회의 민간위원은 지명에 관하여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위촉할 것
4. 시·군·구 지명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원에 대한 해촉 사유를 정할 것
5. 시·군·구 지명위원회의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 등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것

[본조신설 2023. 6. 9.]

제89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국가지명위원회, 시·도 지명위원회 및 시·군·구 지명위원회(이하 “지명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해당 지명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지명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0조(회의) ① 위원장은 지명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지명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1조(간사) ① 지명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국가지명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고, 시·도 지명위원회 및 시·군·구 지명위원회에는 각각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21. 2. 9.>

② 국가지명위원회의 간사는 국토지리정보원의 지명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고, 시·도 지명위원회 및 시·군·구 지명위원회의 간사는 해당 시·도 또는 시·군·자치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각각 임명한다.

<개정 2021. 2. 9., 2022. 1. 18.>

제92조(수당 등) ① 국가지명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이나 제93조에 따라 출석한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도 지명위원회 및 시·군·구 지명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시·도 또는 시·군·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3조(현장조사 등) 지명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명의 제정, 변경, 폐지에 관한 사항과 그 밖의 지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나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1. 2. 9., 2023. 6. 9.>

제94조(회의록) 지명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95조(보고) 법 제91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보고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결정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1. 2. 9., 2023. 6. 9.>

제96조(운영세칙) 지명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거창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폐지안 입법예고

「거창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의 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와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9월 6일

거 창 군 수

1. 자치법규명 : 「거창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폐지안

2. 폐지이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제19호 [별표 20]에 의거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의 건축이 가능한 지역을 고시하도록 하고 있어 「거창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2005. 2. 25.)하였으나, 법령 개정(2014. 1. 14.)으로 군수가 고시할 수 있는 공장건축 가능지역이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자연보전 권역,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으로 한정됨에 따라 이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거창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전문 폐지

4. 예고기간 : 2023. 9. 6.(수) ~ 9. 26.(화)

5. 의견제출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3년 9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도시건축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하실 곳 : 거창군청 도시건축과

- 주 소 : (우 50132)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거창군청 도시건축과)

- 전 화 : 055-940-3584 / 팩 스: 055-940-3579

- 이메일: han2top@korea.kr

- 제출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붙임 1.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2. 「거창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1부.

끝.

[붙임 1]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입 법 예 고 에 대 한 의 건 서				
입법예고명	거창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폐지(안)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전화번호	
	주 소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p>「거창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폐지(안)에 대한 입법예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제 출 자 (서명 또는 인)</p>				
<h2 style="margin: 0;">거 창 군 수 귀 하</h2>				

[붙임 2]

「거창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시행 2005. 2. 25.] [경상남도거창군조례 제1737호, 2005. 2. 25.,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6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71조 제1항 제19호 별표20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지역) 군수는 관할지역내 공장 건축이 가능한 지역(이하 “공장건축가능지역”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는 용도지역은 법 제76조 및 영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계획관리지역으로 한다. 다만, 법 부칙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이 세분될 때 까지는 관리지역에 지정할 수 있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획관리지역"이라 함은 법 제36조 제1항 제2호 다목을 말한다.
2. "관리지역"이라 함은 법 제36조 제1항 제2호를 말한다.
3. "공장"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공장 중 각 목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가. 영 제71조 제1항 제18호 별표19 제2호 사목 (1) 내지 (4)에 해당하는 것
나. 화학제품제조시설(석유정제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물·용제류 등 액체성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품의 성분이 용해·용출되지 아니하는 고체성 화학제품제조시설을 제외한다.

다. 제1차 금속·가공금속제품 및 기계장비제조시설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폐유기용제류를 발생시키는 것

라. 가죽 및 모피를 물 또는 화학약품을 사용하여 저장하거나 가공하는 것

마. 섬유제조시설 중 감량·정련·표백 및 염색시설

제4조(지정시 고려사항) 군수는 공장건축가능지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등 상위 계획 및 개별법에 의한 관련계획과 배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주변지역의 토지이용, 교통여건, 자연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 공장건축에 따른 도로, 용수공급시설, 전기·통신·가스공급시설 등 기반시설의 처리 및 공급 용량 등이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제5조(공장건축가능지역 지정기준) ① 군수는 관할지역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공장건축가능지역으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기능을 상실하거나 낙후되어 재정비가 필요한 지역
2. 소규모 공장이 난립해 있는 지역
3. 학교·군부대·시장 등 대규모 시설물이 이전 또는 폐지되는 지역
4. 토지소유자 등 지역주민이 요청하는 지역
5. 상공회의소,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관계기관·단체에서

요청하는 지역

6. 그 밖에 공장건축에 제한이 없는 지역으로 지정권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

② 군수는 관할지역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공장건축가능지역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 및 문화재보호구역과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자연생태계보전지역
2. 「도로법」에 의한 접도구역·연도구역과 고속교통구역
3.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4. 지방상수도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10킬로미터 이내인 지역
5. 상수원보호구역이 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수장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15킬로미터 이내인 지역과 하류방향으로 1킬로미터 이내인 지역
6. 유효저수량 30만^m³이상인 농업용저수지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5킬로미터 이내(다만, 폐수배출시설이 아닌 공장은 2킬로미터 이내)인 지역
7. 「산림법」에 의한 보존국유림·보안림·천연보호림·채종림·시험림·산림 훼손 허가제한 지역과 「임업진흥촉진법」에 의한 임업진흥권역 및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에 의한 조수보호구역
8. 「군사시설 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 다만, 관할부대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오염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
10. 「지하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를 상수원으로 취수하는 경우 상수원보호구역의 취수장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지역
11. 기존의 집단취락과 500미터 이내인 지역
12. 지방상수도 관로매설지역 및 농업용 배수시설이 설치된 지역으로서 당해 시설의 이설이 필요한 지역
13. 농업용담수호의 수질오염이 우려되는 지역
14. 경사도 18도 이상인 지역이거나 기준 지반고를 기준으로 50미터 이상인 지역
15. 개발로 인하여 산림축 또는 자연생태계의 연속성을 과도하게 단절 시키는 지역

제6조(지정규모) 공장건축가능지역의 지정면적은 1만5천 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으로 하되, 입지수요 및 토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정규모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7조(지정계획수립) ① 군수는 공장건축이 불가능한 사례가 없도록 공장건축가능 지역을 지정하기 전에 당해지역 및 주변지역에 대한 현재 토지이용상태 및 미래 이용계획, 개별법에 의한 공장입주 제한 유·무, 상습재해지역여부 등을 조사 하여야 한다.

② 지정권자는 제1항의 조사결과에 따라 지정목적·위치·면적, 토지이용관

계, 입주가능공장업종 등을 포함한 지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주민의견수렴) 군수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지정계획에 대하여 사전공람 등을 통하여 당해지역의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포함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지정절차) 군수는 지정계획에 대하여 관련행정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후 군 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하며, 이미 지정된 공장건축가능지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당해 지정지역의 100분의10미만에 해당하는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지정·고시) 군수는 공장건축가능지역을 지정하거나 이미 지정된 내용을 변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 공보 및 지역신문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1. 지정목적
2. 지정면적
3. 입주가능공장의 업종
4. 위치도
5. 편입토지조서 및 지적도
6. 지정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 및 내용

제11조(지정·고시내용의 변경제한) 군수는 공장건축가능지역을 지정·고시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고시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이를 변경하지 못한다. 다만, 관계법령 및 조례의 제·개정이나 당해 구역 및 인근 지역의 여건변화 등 필요한 경우에는 고시지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할 수 있다.

제12조(시설지원) 수는 공장건축가능지역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도로, 용수공급시설, 전기·통신·가스공급시설 등 기반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거창군 조례 제 1737호, 제정 2005.2.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